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20조 제2항 관련)

심의 의결서

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심의의결

	(원안) 채택	조건부채택	재심의	반려	비고
출석위원 명 중	/ 명	5 명	명	명	
심의의결		○			해당란에 "O"

기타사항 :

회의록 공개여부 : 공개/비공개(비공개시 사유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

소위원장 : 유보현 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 6공구 제2장지역의 이동객 수요를 고려하여 볼 때면 규모가 크게 늘수 있는 바, 장래 유지비용들을 고려한 때면 축소는 필요가 있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 명 : 710721 (선희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

◦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
(교량의 형상 등)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 명 : 정병천 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

- 8공구 ① 물류세계로 → 아리랑을 단체화·해고, 강성을 배제하는 디자인의
방법
② 시계 11시 → 아리랑과 3.13 창제장의 디자인이 일치되는
디자인으로 강성이 필요.(추후 조정필요)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 명 : 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

서천 심의 의견이 찬성 바랍니다.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명 : 유보현 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

6공구 : - 311정거장 그늘막 기능 수완우망
- 설문1교 교각 대체 우망

8공구 : - 각 교량형태 대체 우망

※ 6,8공구간 교량이 일관성이 수완우망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명 : 최태 (서명) ✓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별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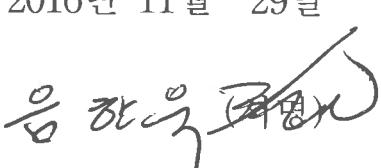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	○		

◦ 사유 :

1. 8공구 문경새재 주변도로 인근 주차장 - 공원을 향한 방향으로 내고 주차장을 향한 방향으로 조성보망.
2. 신풍고 사방은 무제식으로 보망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명 : 응한우 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(제22조 제2항 관련) (개정 2013.1.23)

위원회 심의 의결서

□ 의안명 : 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심의

□ 심의 의견

(해당란에 “○”)

안건명	(원안) 채택	조건부 채택	재심의	반려
이천~문경 철도건설사업 제6,8공구 건설공사 경관설계 적정성	▶			

◦ 사유 :

한국철도시설공단 「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」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16년 11월 29일

성 명 :

이재식 (서명)

한국철도시설공단 경관심의위원회 소위원장 귀하